외국인교원인사시행규칙 4-2-3

규정번호 4-2-3
제정일자 1997.3.1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8차 개정
관리부서 교무입학팀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우리대학의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외국인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5.03.16)

제2조(적용원칙)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교육관계법령을 준용하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, 인사규정 및 우리대학의 제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자격) ①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국내에 체재하는 동안 우리대학에서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학력 및 경력 소지자
2. 외국어회화 및 예·체능계 실기 등 특수분야 해당자로서 별도 심사에 의거 자격이 인정된 자

② “외국인”이라 함은 외국국적 소지자를 말하며, 제1항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2중 국적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4조(교원의 구분) 교원의 임용은 전임교원과 산업체 겸임교수·객원교수로 구분하며 그 직명은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교수·부교수·조교수로 구분한다.

제5조(임용 및 승진) ① 교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학술교류 또는 자매결연 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의 협조가 있거나 기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② 교원의 임용은 우리대학 교원인사에 관한시행규칙 및 강의전임교원임용규정, 비전임교원임용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외국인 중 재외동포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법인인사규정 제7조 제5항에 의한다.

③ (삭제)

제6조(처우 및 복무) ① 교원의 보수 및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 내국인교원의 보수를 참고하여 별도 작성한 임용계약서에 의한다.

② 교원의 책임 및 초과 강의시간은 우리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교원은 임용기간 중 우리대학 전임교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제7조(휴직)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재외동포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법인인사규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을 적용한다.(개정 2024.7.24.)

1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휴직을 요할 때
2. 기타 형편에 의하여 총장이 휴직을 인정할 때

② 교원의 휴직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동기간 내에 복직이 불가능할 때에는 직권 면직

한다.

③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월보수액의 5할을 지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24> <생략>

<25> 외국인교원인사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①, 제7조①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26> - <102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되,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7조제1항)